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3제2항)

나. 아동수당의 조사·질문 시기를 출생신고 통보를 받았을 때 등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법 제10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예정(2026. 10월)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11월)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급결정전아동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지급결정전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

송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조사”를 “지급조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신청조사”를 “지급조사”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조사·질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생 신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

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수급권 있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게 된 때
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아동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국내에 입국한 날

3. 「국적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

4.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 해당 인정 결정이 있는 날(다만, 결정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로 본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기여자등으로 인정된 아동 : 해당 인정 결정이 있는 날(다만, 인정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로 본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중전의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를 “제2항 및 제3항에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을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등의”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주민등록 주소지”를 “주소지”로, “지급 신청서”를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신청서”를 “동의서”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로”로 한다.

제10조의3제5항 중 “제4항”을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법”으로,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를 “지급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서류(대리인이 신</u>	제4조(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서류</u>

현행	개정안
<u>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4. (생략) ② <u>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u>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u>신청조사</u>·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신청조사</u>·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2.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u>지급결정전아동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지급결정전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u> 제6조----- ----- -----<u>지급조사</u>----- -----. 1. <u>지급조사</u>·질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u>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u> <u><신 설></u>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u>지급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u> <u>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u> <u>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생 신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u> <u>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수급권 있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게 된 때</u> <u>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u> <u>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u>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아동: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국내에 입국한 날 3. 「국적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아동: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

현행	개정안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4.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 해당 인정 결정이 있는 날 (다만, 결정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로 본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기여자등으로 인정된 아동 : 해당 인정 결정이 있는 날(다만, 인정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3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현행	개정안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	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 ----- ----- ----- ----- ----- ----- ----- -----.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 ----- ----- ----- ----- ----- -----. ⑦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

현행	개정안
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2. (생략)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u>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u>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은 다음	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 ----- ----- -----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등의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 -----

현행	개정안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u>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 -----. 1. ----- ----- 2. ----- ----- ② <u>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1. ----- ----- ----- 2. -----

현행	개정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u>주민등록 주소지</u>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u>지급 신청서</u>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u>신청서</u>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u>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u>	----- ----- <u>서류</u> 3. ----- ----- ----- ----- ③ 출생아동의 <u>주소지</u>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u>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u>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u>동의서</u>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u>

현행	개정안
처리) ① (생략)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u>법 제6조</u>,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u>지급의 신청 및 지급</u>에 관한 사무 3~12. (생략)	처리) ① -----.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u>법 제9조</u>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u>지급</u>에 관한 사무 3~1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17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시기의 변경(안 제3조)

나. 출생 후 60일 이내 수당 신청 시 소급지급되는 사유 삭제

다. 신청 관련 규정을 동의로 변경(안 제7조,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출생신고 후”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정한 때부터”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를 “제9조제2항”으로, “사람을”을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을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첨부

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해당 서류를 모두 받은 날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을 “보호자등에게 아동수당 지급 계
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의 제출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를 “보호자등이”로,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을 “(첫만남
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의 서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한다.

제9조의3제5항 본문 중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을 “제10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신청”은
“그 서류의”로 한다.

제9조의3제5항 단서 중 “신청인”을 “보호자등”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본문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을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으로, “신청을 접수한”을 “서류를 제출한”으로, “신청인”을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단서 중 “신청인”을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으로, “신청을 접수한”을 “서류를 제출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의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로 하고 같은조제5호2 중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9조·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2항제4호·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호·제13조제4항·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번 호 등 확인 동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 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① ----- ----- ----- ----- ----- ----- ----- -.
1. 출생아동의 보호자: <u>출생신고 후 14일 이내</u>	1.출생아동의 보호자 :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정한 때부터 14일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u>	2. <u>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2. (생략)	제4조(대리인) 법 제9조제2항에서 -- ----- -----다음 각 호의 사람 (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 서식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5조(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는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현행	개정안
<u>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 <u>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u> 1. <u>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u> 2.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u>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u>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u>	<u>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u> 1. <u>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u> <u>해당 서류를 모두 받은 날</u> 2.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u> <u>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u>보호자등에게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u> ----- ----- -----.

현행	개정안
1. <u>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u> 2. <u>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u> <u>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u>	1. <u>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의 제출에-----</u> ----- 2.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u> <u>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u>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u>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u> ② ~ ③ (생략) 제9조의3(<u>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u>)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u>보호자등이-</u> ----- ----- ----- ----- ----- 아동수당 지급 <u>계좌번호 등</u> <u>확인 동의서</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u>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의 서식 등</u>) ① -----

현행	개정안
남이용권 지급 <u>신청서</u>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지급 <u>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u>-----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⑤ ----- -----영 제10조의3 제2항의 요구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 ----- ----- 그 서류의 ----- ----- ----- -----만, 보호자등----- ----- -----.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 -----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해당 <u>신청을</u>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u>신청인</u>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u>신청인</u>에게 알리고 해당 <u>신청서</u>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u>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u>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	<u>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u> <u>요구한</u> 경우에는 해당 <u>서류를</u> <u>제출한</u> 날부터----- -----<u>출생아동의</u> <u>보호자등</u>-----, ----- ----- ----- <u>출생아동의 보호자등</u> ----- <u>서류를 제출한</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통서식) ----- ----- ----- -----. 1. ----- -----<u>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u> <u>등 확인 동의서 및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u> 2. ----- 첫만남이용

현행		개정안																																															
용권 지급 신청서 3~8. (생략)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아동의 보호자(위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 </tr> <tr> <td></td> <td>아동과의 관계</td> <td>전화번호: 휴대전화:</td> </tr> <tr> <td></td> <td>주소</td> <td></td> </tr> </table> 내용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9조·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2항제4호·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제4호·제13조제4항·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임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table border="1"> <tr> <td rowspan="4">대리인(수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 </tr> <tr> <td>전화번호:</td> <td>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td> </tr> <tr> <td>화:</td> <td></td> </tr> <tr> <td>주소</td> <td></td> </tr> </table>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 아동수당의 신청,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임금계좌의 변경 신청,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 보호자 변경의 신청, []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r> <td>업무담당자 확인 사항</td> <td>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td> </tr> </ta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화:		주소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권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 3~8. (현행과 같음)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아동의 보호자(위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 </tr> <tr> <td></td> <td>아동과의 관계</td> <td>전화번호: 휴대전화:</td> </tr> <tr> <td></td> <td>주소</td> <td></td> </tr> </table> 내용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9조·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2항제4호·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제4호·제13조제4항·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임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table border="1"> <tr> <td rowspan="4">대리인(수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 </tr> <tr> <td>전화번호:</td> <td>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td> </tr> <tr> <td>화:</td> <td></td> </tr> <tr> <td>주소</td> <td></td> </tr> </table>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임금계좌의 변경 신청,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 보호자 변경의 신청, []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r> <td>업무담당자 확인 사항</td> <td>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td> </tr> </ta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화:		주소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화:																																																
	주소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지급 대상 아동인 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화:																																																
	주소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고시 명칭을 비롯하여 ‘신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신청 관련 문구 삭제·변경

- 아동수당 신청 서류를 아동수당 관련 서류로 변경(안 제1조)
-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지급결정에 필요한 서류로 변경(안 제3조)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아동수당법」 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의 제출)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요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과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등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7.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4조(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5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 등의 결과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6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동수당 <u>신청</u>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 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아동수당 지급<u>신청서</u>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수당 <u>관련</u>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u>아동수당 관련</u>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아동수당법」 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이란</u>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u>계좌번호</u> 등 <u>확인 동의서</u>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

현행	개정안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5. <삭제>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등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현행	개정안
적 여권 사본 <u>6의2.</u>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u>6의3.</u>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u>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u>제12조</u>(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규칙</u>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u>신분</u>을 확인할 수 있는 서	5.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7.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u>국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u> 8.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u>제4조</u>(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아동수당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 <u>제5조제4항제5호 및 제9조의3제2항제6호</u>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현행	개정안
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u>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u>전산파일로</u> 기록·관리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u>보호자의 신분을</u>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u>제5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u>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u>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u>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 등의 결과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u>수급자관리카드의 서식은 사회보장급</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조사표 및 <u>수급자관리카드</u>는 <u>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u> 제15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u>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u>) <u>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	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삭제> 제2조(<u>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의 제출</u>)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요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과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모급여 지급액)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u>출해야 한다.</u>
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u><삭제></u>
제17조(부모급여 지급액)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u><삭제></u>
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2년</u> 1월 1일 기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7년</u> 1월 1일 기

현행	개정안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